

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

◆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분	내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무주택세대주 ※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불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혼인(재혼포함)중이거나 有자녀(입양포함, 혼인중이 아닌경우 등·초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녀) 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※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·세액공제·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경우 포함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 ※ 가구원수 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수 산정
선정방법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- 미달 시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) 거주자에게 공급 -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
유의사항	※ 예비입주자는 모든 특별공급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, 타 특별공급의 낙첨자와 함께 추첨

◆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「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」

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130%이하	7,221,478원	8,094,245원	9,019,860원	9,872,308원	10,724,756원	11,577,203원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÷(1인당 평균소득(655,729)×(N-8)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 수

◆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

구분	제출서류	발급기관
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	① 세무서

◆ 소득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 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▶ 전년도 갑종근로소득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	* 해당직장 *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, 전직자	①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※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→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(개인정보 삭제)	*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②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①, ② 서류 중 하나 제출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* 국민연금관리공단 *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
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	* 세무서 *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	*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	* 접수장소	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요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◆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무주택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- 기본주택에 비치 - 무주택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)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
	○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'청약Home'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(www.applyhome.co.kr) [장 애인, 국가유공자, 철거주택소유자 제외] -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단독세대일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함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해당지역 : 대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(20.11.19.)로 지정하여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-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처측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상세)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 ※ 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
	○		소득증빙서류(상세)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,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) ※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자녀	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-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-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-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	○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-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1.19.) 이전의 5개년도 서류[표2]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- 비사업자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
제3자 대리인 신청서 추가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- 본인발급본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위임장	청약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모집공고일(2020년 11월 19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
- ※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
-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요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